의안번호	제493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4년 1월 15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93

제출연월일 : 2024년 1월 15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2023. 4. 7. 개정·시행된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」 제2조제2호 등에 맞게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변경하고, 신설 숙박시설(트리하우스)의 사용료 기준을 반영함.

○ 또한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용객에 대한 시설물 퇴거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환급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,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다자녀 가정에 관한 정의 규정 중 자녀 수 변경(3명→2명) (안 제3조제11호)

○ 위약금 미부과 대상을 이용객이 재난으로 인해 자연휴양림으로의 이동·접근이 곤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13조제5항)

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 도중 퇴실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(안 제14조제5항)

○ 관리자가 재난으로 인한 시설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5조)

○ 시설 사용료(트리하우스) 항목 신설(안 별표1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1호 중 “3인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5항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 접근”을 “예약한 사람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것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 도중 퇴거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환급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일부 제한할”을 “일부를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설물 사용에 대한 예약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물을 사용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1]

시설사용료(제9조제1항 관련)

□ 시설사용료 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기준	1일 요금		비 고
		비수기 주중	성수기 및 주말	
숲속의 집	1동/2인 (33.2제곱미터)	48,000	80,000	
	1동/4인 (36.0~37.4제곱미터)	48,000	80,000	
	1동/6인 (32.9~46.7제곱미터)	60,000	100,000	
	1동/8인 (50.8~54.8제곱미터)	78,000	130,000	
	1동/10인 (58.1~63.4제곱미터)	96,000	160,000	
	1동/12인 (116.6제곱미터)	120,000	200,000	
트리하우스	1동/4인(1호) (31제곱미터)	96,000	160,000	
	1동/4인(2호) (51제곱미터)	96,000	160,000	
	1동/4인(3호) (31제곱미터)	48,000	80,000	
복합휴양관	1실/4인 (25.2제곱미터)	42,000	70,000	
	1실/6인 (37.8제곱미터)	54,000	90,000	
	1실/10인 (62.9제곱미터)	84,000	140,000	
무궁화관	1실/4인 (32.4제곱미터)	48,000	80,000	
	1실/6인 (42.6제곱미터)	60,000	100,000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“다자녀 가정”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.	11. ---------- 2명 ----------.
12. ~ 17. (생 략)	12. ~ 17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위약금 처리) ① ~ ④ (생략)	제13조(위약금 처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⑤ 예약한 사람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것----------.
제14조(환불처리) ① ~ ④ (생략)	제14조(환불처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요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.	⑤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 도중 퇴거하

	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환급한다.
제15조(이용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.	제15조(이용제한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일부를 제한하거나 퇴거하도록 할 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산불·산사태 등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	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제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>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2. 21.>[본조신설 2015. 1. 20.][제목개정 2018. 2. 21.]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   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  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□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

제2조(정의)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[시행 2023. 4. 7.]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**첨부제외 관련규정**

-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1조제4항제1호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.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**사　유**

-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숙박동 신설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고 다자녀 정의 수정 및 재난시 이용제한, 환불처리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**작성자 : 산림환경연구소장　김태은**